

비대면 투자자문 계약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퀀팃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자문재산"이라 한다.)운용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비대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 ① 본 계약서는 고객과 회사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투자자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서는 투자자문재산의 매매거래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 등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투자자문' 또는 '투자자문서비스'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별 맞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제공, 주기적 리밸런싱에 관한 자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이란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3. '전용계좌'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에 수반하여 회사의 제휴 금융회사를 통해 새롭게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4. '투자자문재산'이란 전용계좌에 예치된 자산(금융투자상품 및 현금을 포함하며, 이하 본 호에서 동일함) 전체를 의미하며, 전용계좌에 예치된 자산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자산으로 한다.
5.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이하 '로보 어드바이저'라 한다.)란 투자자문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제2장 투자자문 수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3조(투자자문의 대상)

①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법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4조(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①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투자자문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하여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 의 자문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5조(자문 제공 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목표수익률, 투자기간, 투자금액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전자방식(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6조(이해상충 방지)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한다.

② 회사는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한다.

③ 회사는 고객과 회사 간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연계매매)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명시적인 위임을 받은 경우, 투자자문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의 전용계좌에 대한 매매 주문을 제휴 증권사를 통해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매매의 주요 조건(종목, 수량, 가격, 주문방법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고지하고, 고객은 이를 확인한 후 매매 실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매매 주문의 실행에 있어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고객의 명시적 요청 없이 매매를 실행하지 않는다.

④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한 매매의 결과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된다.

⑤ 본 조항에 따라 실행되는 자문연계매매는 고객의 명시적 동의 및 위임을 전제로 하며,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본 계약 제16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부통제를 유지한다. 특히, 자문결과에 따른 매매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8조(투자자문수수료 등)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 [별지 1]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1.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별지 1]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2. 성과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의 투자성과와 연동하여 고객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3. 정액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과 관계없이 [별지 1] 세부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정액수수료이다.

② 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보수, 거래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고객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시기, 산정기준은 [별지 1]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자문담당자)

- ① 본 계약의 투자자문담당자는 [별지 1] 세부계약조건 기재와 같다.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변경 절차(제22조)를 따른다.

제12조(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

- ① 고객은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회사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을 제공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투자자문업무 수행 중 제공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 따라 회사가 해당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전용계좌가 개설된 영업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통지의무)

- ① 고객은 전용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지점 및 해당 계좌번호, 제2항에 따른 [별지 1] 기재 통지처, 고객의 주소 및 기타 연락처, 그밖에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와 본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며, 회사는 이러한 경우 고객의 상속인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의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6조(회사의 금지사항)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법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단, 전자적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는데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투자자문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나. 차익거래 등 투자자문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규에서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17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인터넷 서비스나 통신기기·회선 장애 등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물 또는 시스템의 하자,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2. 서류 및 서명,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실

제18조(계약 기간 및 갱신)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 1]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투자자문재산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지급이 완료된 직전 계약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그 밖에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요청 시 투자자문재산의 매매 주문에 대한 체결 및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문의 체결 및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 해지가 연기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 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압류절차, 기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거래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투자자문재산 인출에 따라 투자자문재산이 [별지 1]에서 정한 최소자문금액과 출금신청일 기준 예상 성과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 (다만, 투자 결과로 인해 금액이 미달한 경우는 제외함)
4. 고객이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전용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재산 상속 절차상 투자자문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전용계좌 명의 변경 등 전용계좌 및 전용계좌에 예치된 투자자문재산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5.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6. 고객이 본 계약 또는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관련 법령이나 규제의 변화,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등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투자자문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투자자문에 의하여 실행된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0조(계약, 만료, 해지 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는 현금(원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하기 직전 계약의 만료 시점의 재산형태는 해당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며, 그 외 고객과 회사 간 사전 합의 시 각 해당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함).

제21조(투자자문재산의 평가)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 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요청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다만,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 이하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2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과 계약기간 중 납입·인출된 평가자산을 가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자문재산 순자산가치 증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20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세금, 수수료, 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② 증권(투자자문재산에 편입한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을 포함함)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3조(계약의 변경)

① 회사는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임직원의 사망·퇴직·휴직 등 불가피하게 사전에 안내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없이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고객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사전 안내가 어려운 사정에 의한 변경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세부계약조건)

본 계약의 본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 1] 세부계약조건에 따른다.

제25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제공된다.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

본 계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 및 고객에게 제공한다. 투자일임대상 계좌의 개설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며, 고객의 전자우편주소로 본 계약서가 자동 발송된다. 계약기간 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본 계약서의 발송을 재 요청할 수 있다.

卷之三

[고객] 성명 : (서명)

[회사] 상호 : 주식회사 퀸텟투자자문
사업자등록번호 : 188-87-02634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여의도동) 13층
대표이사 : 송성환 (인)

[별지 1]

I. 상세계약정보

성명	:
생년월일	:
계좌개설금융기관	:
계좌번호	:
계좌유형	:
고객통지이메일	:
계약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은 전용 계좌에 최소자문금액이 입금된 시점부터 개시함. * 제17조 제2항에 따른 통지 후 계약 만료일까지 고객으로부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됨.
	투자자문서비스가 제공되는 재산 1) 금융투자상품별 최소운용 금액 : 상품마다 상이 2) 계약 갱신 시의 투자자문재산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지급이 완료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투자자문수수료	1) 기본수수료 : 0.744%/년 (0.062%/월) * 투자자문재산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일할 적용 산정함. 2) 성과수수료 : 없음 3)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자문연계매매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는 해당 증권사에서 정하는 수수료정책에 따라 부과됨. *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수수료는 변경 후 계약을 기준으로 잔존 계약일수에 대해 산정한 수수료와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경과한 계약일 수에 대해 산정한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일할 적용·산정함. * 기본수수료는 자문계약 체결 후 투자자문재산이 최소운용 금액 이상이면서 고객에게 자문 포트폴리오가 제공된 일자부터 기산함.
수수료 지급 시기 및 방법	* 기본수수료의 지급은 계약기간 중에는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매월 후취), 계약기간의 만료일, 계약해지일(고객의 계약 변경 요청에 따른 중도해지일 포함)에는 각 해당일에 이루어지고, 해당일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익영업일에 이루어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자문수수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미지급 투자자문수수료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 다음날부터 고객이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6%로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회사는 14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의 지급을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투자자문재산의 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중 투자자문재산의 출금은 최소자문금액과 출금신청일 기준 예상 성과수수료의 합산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출금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용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해 인출이 가능함. * 간신 없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투자자문재산에서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 기준 예상 성과수수료를 제외한 범위에서 출금 가능하며,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용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해 인출이 가능함. * 다만, 투자자문재산의 처분 또는 환전이 지연되는 경우 위 기한보다 인출가능일자가 연기될 수 있음.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알림톡, 문자메시지 또는 개인 이메일을 포함함.

II. 로보어드바이저 유의사항

본 상품은 투자자문담당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참고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본 자문 상품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문담당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자문담당자가 활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 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준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므로 투자자문담당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자문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III. 기타 주요사항

고객의 '수수료 출금이체 동의'는 본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 해당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객이 계약기간 중 해당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없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고 수수료 수취가 완료되는 경우 고객의 '수수료 출금이체 동의'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관계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하거나 운용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여 그 발행, 운용 또는 거래에 관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문 시 제안하는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